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 · 정춘생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16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임미애 · 정춘생 · 정혜경
윤종오 · 전종덕 · 이해민
손 술 · 차규근 · 김재원
한창민 · 서왕진 · 강경숙
서미화 · 김영배 · 김남근
박지혜 · 이광희 · 신장식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는 막대한 권한과 재정을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대해서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통합을 추진하는 시(市) 지역과 도(道) 지역은 인구 차이에 비해 시의회와 도의회간 의석수의 격차가 커서 현행 제도를 단순 적용할 경우 인구 대표성의 불비레가 심화될 우려가 크며, 시지역 의석을 단순 증원하기에는 의석 증원 규모가 커져서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재 통합이 추진되는 지역은 일당독점 구도가 공고한 지역이 많아, 통합시의회의 구성에 있어 표의 비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존의 ‘강력한 단체장-유명무실한 지방의회’의 구도만 강해질 뿐 실질적인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기 어려움.

이에 행정통합으로 인해 설치될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를 국회의원선거구로 확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여 통합특별시의회의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구의 확정) 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설치된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의 구성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구성의 다양성 등을 보장하여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통합시의원지역구”라 한다)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확정하고, 하나의 통합시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6조의2(통합특별시의회의원선거구의 확정) 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설치된 통합특별시의 통합특별시의회의 구성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구성의 다양성 등을 보장하여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u> <u>② 제2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로 한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통합시의원지역구”라 한다)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와 동일하게 확정하고, 하나의 통합시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u>